

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310
----------	------

2021년 4월 22일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1년 4월 2일, 이병도 의원 외 26명

나. 회부일자: 2021년 4월 6일

다. 상정일자: 제30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
(2021년 4월 22일 상정·의결(수정안 가결)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이병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자원순환을 통해서 서울 시민의 건강과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고,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자원순환 교육을 통해서 서울시민의 자원순환을 생활화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순환 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의 처분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제3호 신설).
- 전문적인 자원순환을 위한 통계조사 근거를 마련함(안 제8조 신설).
-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원순환 교육을 규정함(안 제16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: 「자원순환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

4.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: 이재효)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순환 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의 처분 사항을 명시하고 전문적인 자원순환을 위한 통계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순환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현행 조례 제3조는 폐기물의 발생원 감량과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자원순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원순환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폐기물의 최종 처분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바, 안 제3조제3호와 같이 '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의 적정 처분'을 자원순환의 기본원칙에 추가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- 현행 조례 제7조제3항에는 「자원순환기본법」 제13조에 따라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, 안 제8조와 같이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·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임.

「자원순환기본법」

제13조(자원순환 통계조사) ① 환경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제12조에 따른 시행계획·집행계획의 수립과 제14조에 따른 국가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환경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·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대상·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- 안 제16조는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없음

7. 수정안 요지

- 현행 조례 제7조제3항에는 「자원순환기본법」 제13조에 따라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, 안 제8조를 삭제하고자 함.

8. 심사결과: 수정안 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310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: 2021년 4월 22일

제안자: 환경수자원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현행 조례 제7조제3항에는 「자원순환기본법」 제13조에 따라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, 안 제8조를 삭제하고자 함.

2. 주요 골자

- 자원순환 통계조사 실시 규정을 삭제함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3항 중 “최소화 되도록”을 “최소화되도록”으로 한다.

안 제8조는 삭제하고, 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는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한다.

<p>〈신 설〉</p>	<p><u>제16조(교육)</u> 시장은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순환 관련 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</p>	<p><u>제15조(교육)</u>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<u>제15조(재정적 지원 등)</u> (생략)</p>	<p><u>제17조(재정적 지원 등)</u> (현행과 같음)</p>	<p><u>제16조(재정적 지원 등)</u> (개정안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순환 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

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,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5조(교육) 시장은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순환 관련 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기본원칙)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, 자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, 사업자 및 시민 등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<u>〈신설〉</u></p> <p><u>〈신설〉</u></p> <p>제15조(재정적 지원 등) (생략)</p>	<p>제3조(기본원칙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순환 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</u></p> <p>제15조(교육) <u>시장은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순환 관련 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16조(재정적 지원 등) (현행 제15조와 같음)</p>